



시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생활정치 구현

의안번호

제14호

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원 의원 등 6명
제출연월일	2026. 2. 9.

#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4호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26. 2. 9.

대표발의자: 서 원

공동발의자: 조배식, 민병춘,  
서승필, 홍태의,  
이태모

## 1. 제안이유

난임 치료 이전 단계인 진단 과정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여, 난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 신설에 관한 사항(제6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
나. 기타사항
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- 조례안예고: 2026. 2. 9. ~ 2. 14. (5일간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의회 조례 제 호

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 관 부 서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	서원 의원 등 6명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6조(지원사업 등) 시장은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   략)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 <p><u>3.·4.</u> (생   략)</p>	<p>제6조(지원사업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.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</u></p> <p><u>4.·5.</u>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</p>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